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-

# 제 안 설명서



2023. 11.

강 한 곤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강한곤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,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업대상,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포상 규정을 명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 □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므로,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

(강한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0092313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3. 11. 3.  
발의자: 강한곤, 장호섭, 박정환, 김장관,  
정순옥

## 1. 제정이유

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(안 제1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2조)
- 다.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사업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바.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함(안 제6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1
- 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달서구 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,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날·추석 명절 전
2. 하계휴가철 전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

제4조(사업대상)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·장애인·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

2.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

제5조(보조금 지원 및 관리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포상) ①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## □ 자동차관리법

제67조(사업자단체의 설립)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(이하 “조합등”이라 한다)를 설립 할 수 있다.

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(發起)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삭제

2. 삭제

3. 삭제

4.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

5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

## 6.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

-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·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-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